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개정 사항인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 2)
-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 등이 가능토록 확대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 부정행위로 인정됨에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 과정에서 수검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체검사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우리 부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 마련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9조)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미비했던 승인절차도 보완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및 제302조)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조종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내

용에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된 국제표준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제8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정비인력을 말한다.

1.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
2.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등 계획되지 않은 고장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 정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위탁받은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력

4.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5.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의 휴직, 휴가 등 예상하지 못한 정비인력의 손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6. 항공기가 제작된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산출기준과 방법 등 인력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항공기 운용 계획서(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4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아.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중 “그 사실”을 “관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로,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제93조제4항”을 “제9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3조제3항”을 “제9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3조제4항”을 “제9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를 제때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서 정한 승무시간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구 대비표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77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결심고도 (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
A형(Type A)		75미터(250피트)이상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강고도를 적용	해당 사항 없음
B형 (Type B)	1종 (Category I)	60미터(200피트)이상 75미터(250피트)미만	시정 800미터(1/2마일) 또는 RVR 550미터 이상
	2종 (Category II)	30미터(100피트)이상 60미터(200피트)미만	RVR 300미터 이상 550미터 미만
	3종 (Category III)	30미터(100피트)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No DH)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No RVR)

제187조제5항 중 “제186조제6항”을 “제186조제7항”으로 한다.

제190조제4항제2호나목 중 “시간”을 “시간이거나 자동중속감시시설(AD 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행안전시설”을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항행안전시설”을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 한다.

제26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항공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장”으로 한다.

제30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02조제2항 중 “지방항공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3조제1항 중 “법 제123조제2항”을 “법 제1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3조제3항”을 “법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로 한다.

제3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다음”으로 한다.

제306조제5항 중 “별표 44의2”를 “별표 44의3”으로 한다.

제3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등 교육·훈련 등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등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1조제3항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운영절차를 위반하여 조종하는 행위

제311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별표 44의2에서 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17조제2항제2호 중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를 “경년항공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 중 “3개월”을 “관제실무감독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3개월”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에서 “관제실무감독관”이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 운항관리사의 항공법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규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별표 5 제1호가목1) 운항관리사의 항공기의 과목의 범위란 가목 중 “성능”을 “이착륙·순항 성능”으로 하고,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에 운항관리사의 항행안전시설의 과목의 범위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 운항관리사의 실시범위란 나목3)

중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향후 영향성 예측”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긴급상태 등의 대응”을 “긴급상태에서의 적절한 조치 결정”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과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바. 표준운항절차의 적용

5) 운항감시(Flight Monitoring) 및 비행의 개시, 지속, 전환, 종료를 위한 표준 절차

7) 기상, 항공기 상태, 운항절차와 연관된 최소 운용제한 적용
별표 12 제1호, 제2호, 제3호에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역량기반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를 할 것

별표 12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역량기반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를 할 것

별표 20의2 제2호3) 중 “활주로·헬리패드”를 “활주로·헬리패드(헬리콥터 이착륙장)”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fuel drain system”을 “fuel dumping system: 비행 중 항공기 중량 감소를 위해 연료를 공중에 배출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페더링시스템”을 “페더

링시스템(프로펠러 날개짓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으로 한다.

별표 2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난신호(Distress signals)

별표 26 제1호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메이데이(MAYDAY)”라는 말로 구성된 무선 전화 조난 신호

5) 데이터링크를 통해 전달된 “메이데이(MAYDAY)” 메시지

별표 2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긴급신호(Urgency signals)

별표 26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데이터링크를 통해 전송된 “PAN PAN”

별표 26 제5호가목 빛총 신호의 표 중 차량·장비 및 사람란 중 연속되는 녹색 란을 공란으로 하고, 깜빡이는 녹색 란을 “통과하거나 진행할 것”으로 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 란 중 깜빡이는 녹색 란의 “착륙을 준비할 것”을 “착륙을 준비할 것(착륙 및 지상유도를 위한 허가가 뒤이어 발부될 것임)”으로 한다.

별표 26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도신호(MARSHALLING SIGNALS)

별표 26 제6호가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조명봉”을 “유도봉”으로 하고, 같은 목 4) 제2호 중 “막대를 위쪽”을 “유도봉을 위쪽”으로, 같은 란 중 “막대를 아래”를 “유도봉을 아래”로 하고, 같은 4) 제3호 및 제4호 중 “막대를”을 각각 “유도봉을”로 하며, 같은 4) 제5호 중 “팔꿈치를 구

부려 막대를”을 “옆으로 벌린 팔을 구부려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6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며, 같은 4) 제6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6호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같은 란 중 “막대가”를 “유도봉이”로 하고, 같은 4) 제6호 중 “막대를 교차시킨다”를 “유도봉을 교차시킨다”로 하며, 같은 4) 제6호 전단 중 “팔과 막대를”을 “유도봉을 든 팔을”로 하고, 같은 란 후단 중 “막대가”를 “유도봉이”로 한다.

별표 26 제6호가목4) 제6호 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6호 전단 중 “팔과 막대를”을 “유도봉을 든 팔을”로 하며, 같은 란 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6호 전단 중 “막대는”을 “유도봉은”으로 하며, 같은 란 후단 중 “막대”를 “유도봉으로”로 하고, 같은 4) 제6호 중 “막대를 켜”를 “유도봉을 켜”으로, 같은 란 중 “막대를 오른쪽·왼쪽”을 “유도봉을 오른쪽·왼쪽”으로 하고, 같은 4) 제16호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며, 같은 4) 제17호 중 “손바닥”을 “양손의 유도봉”으로, 같은 란 중 “손”을 “유도봉”으로 하며,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중 “양 팔과 막대를”을 “유도봉을 든 팔을”로 한다.

별표 26 제6호가목4)제20호 전단 중 “팔과 막대를”을 “유도봉을 든 팔을”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팔과 막대를”을 “유도봉을 든 팔을”로 하며, 같은 4) 제20호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며,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막대”를 “유도봉”으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하며, 같은 4) 제20호 후단 중 “막대”를 “유도봉을 사용하여 머리 위로”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25와”를 “31과”로 하며, 같은 후단 중 “막대”를 “유도봉을 사용하여”로 하고, 같은 4) 제20호 전단 중 “막대를”을 “유도봉을”로 한다.

별표 36 제1호가목40) 중 “사항(국외를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별표 37에 제5호 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마목부터 아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엔진 수리작업 기준(Workscope planning)에 관한 사항	O		O
--	---	--	---

별표 37에 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적정 예비엔진 수량을 판단하는 기준	O		
------------------------	---	--	--

별표 44의2를 별표 44의3으로 하고, 별표 4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7 제21호다목 중 “가목의 기량심사”를 “나목의 기량심사”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행교범(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비교범(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 한한다)
4. 항공기 운용 계획서(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

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64) 중 “「항공안전법」 제40조에”를 “「항공안전법」 제43조에”로 한다.

별지 제6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중 “지방항공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중 “신고공무원”을 “신고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교통관제사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 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 설>

무인자유기구의 분류(제5조 관련)

1. 소형급(light) : 1개 이상 화물의 총중량이 2kg 이상 4kg미만을 운반하는 무인자유기구로서,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대형급은 제외한다.
2. 중형급(medium) : 2개 이상 화물의 총중량이 4kg 이상 6kg미만을 운반하는 무인자유기구로서,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대형급은 제외한다.
3. 대형급(heavy) :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운반하는 무인자유기구

가. 총중량 6kg 이상

나. 개별 화물의 중량이 3kg 이상

다. 밀도가 13g/cm³ 이상인 개별 화물의 중량이 2kg 이상

라. 230뉴톤(newtons) 이상을 지탱하는 밧줄 또는 기타 지주를 사용하는 경우

특성		총 중량(kg)					
		1	2	3	4	5	6 이상
로프 또는 기타지주 230newtons 이상							
개당 중량	밀도 13g/cm ³ 이상	-		대 형			
	밀도 13g/cm ³ 이하						
총 중량		소 형		중 형	중 형		

[별표 44의2] <신 설>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절차(제311조 관련)

1. 운용 규칙(General operating rules)

- 가. 기상관측용으로서 이 절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소형급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가로질러 무인자유기구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계획당시 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공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이 되면 기구를 부양하기 전 관할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일련의 기구 비행 및 대기연구용 기구 운용 등의 경우 반복비행(Recurring Flight)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무인자유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라 한다)는 이 절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가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라. 무인자유기구 또는 운반물의 일부분이 지면과의 충돌로 인하여 동 운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마. 공해상에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형급(이하 “대형급”이라 한다) 무인자유기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운용한계 및 장비기준(Operating limitations and equipment requirements)

- 가.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다음 1)내지 2)의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 없이 18,000미터(60,000피트)미만의 어느 고도에서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4 옥타(ktas) 이상의 구름 등이 있을 경우
 - 2) 수평시정 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 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중형급(이하 “중형급”이라 한다) 또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도시, 변화가 등 인구밀집지역 또는 동 운용과 관련이 없는 옥외군중의 상공을 300미터(1,000피트)미만의 고도로 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인자유기구를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동 또는 원격조정으로 유상하중을 이탈시키는 독립적인 도구 또는 장치가 2개 이상 있을 것
 - 2) 폴리에틸렌 0(Zero) 기압기구의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기구 자체의 비행을 종료시키는 방법, 장치, 도구 또는 이들의 조합이 2개 이상 있을 것
 - 3) 기구는 200MHz~2,700MHz의 주파수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지상레이더에 반사 신호를 보내는 반사기 또는 반사체를 탑재하거나 지상레이더의 유효범위 밖에서 운용자가 계속적으로 항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탑재할 것
- 4)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는 배정된 코드(code)로 계속 작동되거나 필요한 경우 감시국(Tracking station)에 의해 작동시킬 수 있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

더(SSR 트랜스폰더 또는 ADS-B 송신기)를 탑재하지 않는 한 지상 SSR 장비 또는 ADS-B 장비가 운용중인 지역에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어느 부분이든 파손시키는데 230뉴톤(newtons)을 초과하는 힘이 필요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무인자유기구는 동 안테나에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부착된 유색 삼각 깃발 또는 표지기를 달지 않는 한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야간(일몰과 일출사이)에 등화를 달지 않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는 고도 18,000미터(60,000피트) 미만에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15미터를 초과하는 길이의 계류도구(현저히 눈에 띄는 색깔의 낙하산이 아닌 것)를 가진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는 계류도구가 현저한 색깔이 교대로 도색되거나 또는 유색 삼각 깃발을 부착하지 않는 한 일출과 일몰사이에 고도 18,000미터(60,000피트) 미만에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종료(Termination)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의 제2호다목 1) 내지 2)에서 정하는 적절한 종료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 1) 기상상태가 동 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기준치 미만일 때
- 2) 고장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항공기, 사람 또는 지상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다른 국가의 영토상공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하기 전

4. 비행통보(Flight notification)

가. 비행 전 통보

- 1) 중형급 또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예정된 비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예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1)에 따라 비행예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부터 카)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식별부호 또는 계획명칭
 - 나) 기구의 분류등급 및 특징
 - 다) SSR code 또는 NDB 주파수
 - 라) 조종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 마) 부양위치
 - 바) 부양예정시간(연속하여 부양할 경우 시작 및 종료시간)
 - 사) 부양 기구 수 및 예정부양간격(여러 개를 부양할 경우)
 - 아) 예상 상승방향
 - 자) 순항비행고도(기압고도)
 - 차) 기압고도 18,000미터(60,000피트)를 통과하거나, 고도 18,000미터(60,000피트)이하의 수평비행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예정 소요시간 및 위치
 - 카) 비행종료일시 및 낙하위치. 비행종료 일시 및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장기간”이란 용어 사용

3) 위의 2)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부양예정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전 또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인 태양 또는 우주전파간섭에 대한 연구목적일 경우 운용개시에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사통보

조종자는 중형급 또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를 부양한 직후 다음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기구비행 식별부호
- 2) 부양위치
- 3) 부양시간
- 4) 기압고도 18,000미터(60,000피트) 통과예정시간 또는 고도 18,000미터 (60,000피트) 이하의 수평비행고도 도달예정시간 및 예정위치
- 5) 부양기구 수, 예정부양간격(여러 개를 부양할 경우) 및 예상 상승방향의 변경사항

다. 취소통보

조종자는 중형급 또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치기록 및 보고(Position recording and reports)

가.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기구의 비행경로를 추적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요구할 경우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기구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 1) 기압고도 18,000미터(60,000피트)이하의 고도에서 운용되는 경우 매2시간마다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 2) 기압고도 18,000미터(60,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에서 운용되는 경우 매24시간마다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가목에 따른 기구의 위치를 기록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기구의 위치추적이 재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강하개시 1시간 전에 다음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최종위치
- 2) 최종고도(기압고도)
- 3) 기압고도 18,000미터(60,000피트) 진입예상시간
- 4) 지상낙하 예상시간 및 위치

마. 중형급 또는 대형급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운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할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3서식]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회사명 및 주소		
	운항주기지의 주소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 예정일		3개 문자로 된 회사식별 부호(우선순위 순으로 적음)	
		①	② ③
회사대표	성명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직위		
사업종류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승무원	운항승무원 수		
	자료		
		객실승무원 수	
운항지역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정보			

「항공안전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의2제1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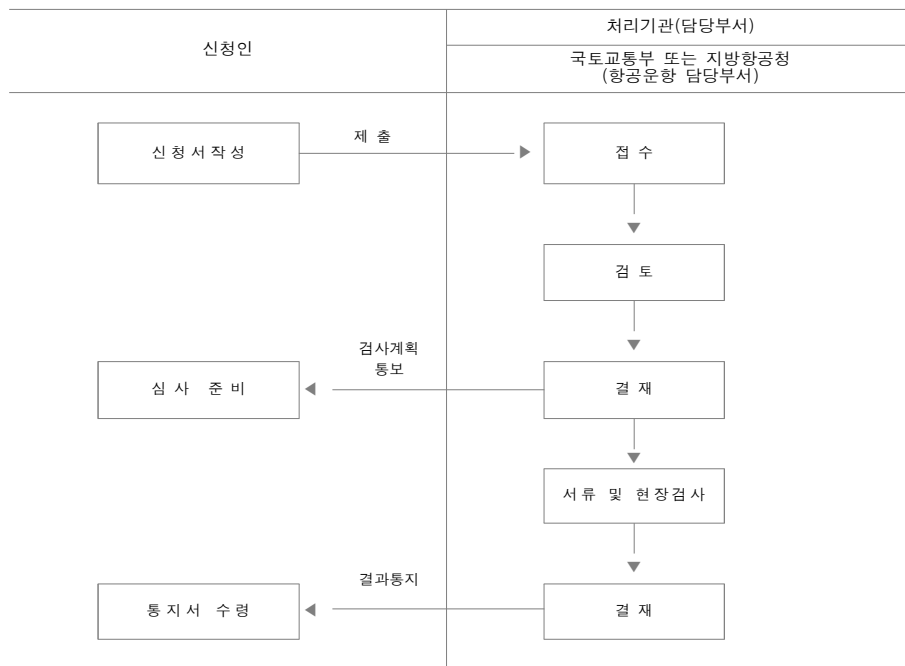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수수료(Free)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승인서

Certificate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번호(AOC No.):	사업자 명(Operator Name):	세부 연락처(Operational Points of Contact):
AOC 형태(Type of AOC) ☐ International Air Carrier ☐ Domestic Air Carrier ☐ Small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or ☐ Aerial Work Operator	주소(Operator Address): 전화번호(Telephone): 팩스(Fax): E-mail:	

이 증명서는 「항공안전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에 따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authorize operation of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s Manual and the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gulations and standards.

유효기간: 이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함.

Expiry Date: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unless returned, suspended or revoked, shall continue in effect until otherwise terminated.

발행일자(Date of issue): 년(year) 월(month) 일(day)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명 칭	성명(대표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번호	
	주소(운항주기지의 주소)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공안전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7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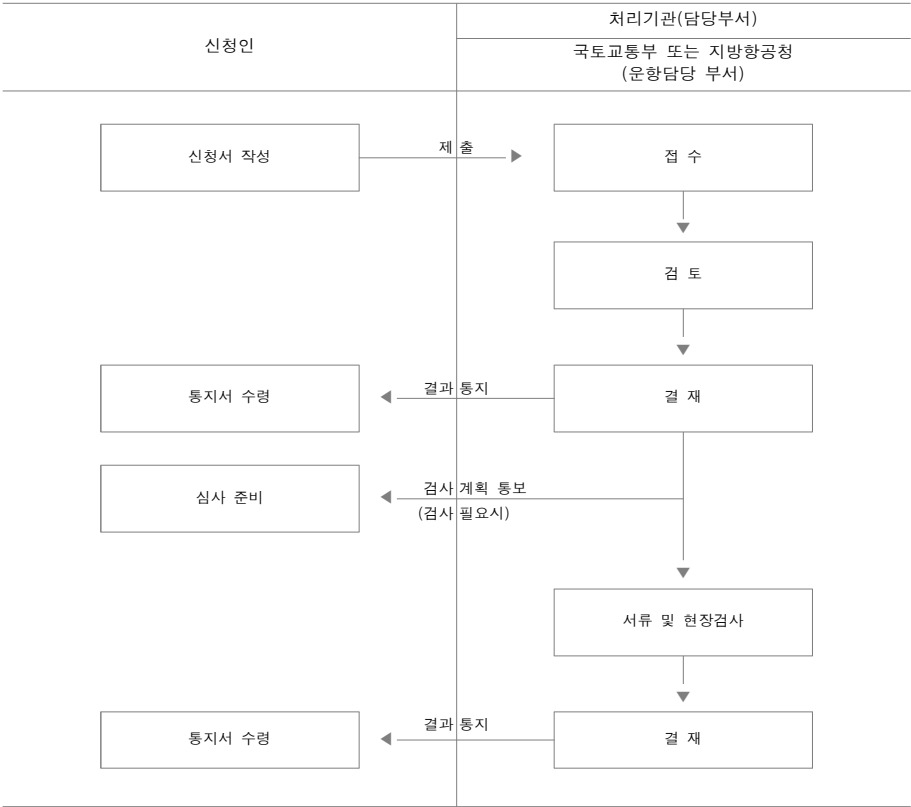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수수료(Free)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구대조표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제1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제302조제2항
제30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규
변경이전
말소]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 * 표시 항목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 수집 가능(카메라 등 탑재) 여부를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현행	개정안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4. ----- ----- -----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가. 유인자유기구
<신설>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나. (생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u>별표 1의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u>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 ----- <u>별표 1의2</u> ----- ----- ----- ----- ----- ----- -----.
<u><신설></u>	<u>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인력”이란 다음 각호의 정비인력을 말한다.</u>
	<u>1.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u>
	<u>2.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등 계획되지 않은 고장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u>
	<u>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 정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인</u>

	<u>경우에는 위탁받은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력</u>
	<u>4.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u>
	<u>5.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의 휴직, 휴가 등 예상하지 못한 정비인력의 손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u>
	<u>6. 항공기가 제작된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u>
	<u>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u>
	<u>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산출기준과 방법 등 인력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u>	<u>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 ----- ----- ----- -----</u>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 다)
<신설>	4. 항공기 운용 계획서(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 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 ----- ----- ----- ----- ----- -----
1. ~3. (생략)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1. ~3. (현행과 같음) 4. -----

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신설>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 자재 등의 운반에 사용하 는 경우(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 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 동에 사용하는 경우 아.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 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경우
<신설> <신설>	5. (현행과 같음)
5. (생략)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 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관정을 보류 하고 그 사실----- 통보해 야 ----- ----- ----- ----- -----

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신 설>	
③ ~ ⑤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 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 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 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 회는 제93조제4항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 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 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 ---- 제93조제5항-----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 소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2호 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 소 등) ① ----- ----- ----- -----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 체검사증명서의 발급	1. 제93조제3항----- -----
2.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 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 성·관리	2. 제93조제4항----- -----
3.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 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 지	3. 제93조제5항-----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② (생 략)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 는 항공기를 운영하려는 자 또 는 소유자등은 해당 지상접근경 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를 제때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 터베이스 관리 절차를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28조의2(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6 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

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서 정한 승무시간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u> 2. <u>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u> 3. <u>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u> <u>⑦ 제6항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u>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u> 2. <u>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구 대비표</u> <u>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87조(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 ④ (생략)	제187조(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86조제6항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과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u>	⑤ <u>제186조제7항</u> ----- ----- ----- ----- ----- ----- -----.
제190조(통신) ① ~ ③ (생략)	제190조(통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u>	④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구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u>	2. ----- ----- ----- ----- ----- ----- -----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	-----
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	-----
여 비행할 것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	나. -----
으로 조정하 <u>시간</u>	----- <u>시간이거나 자</u>
	<u>동종속감시시설(ADS-B)</u>
	<u>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u>
	<u>한 시간</u>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4. -----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	-----
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	-----
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	-----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	-----
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	-----
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	-----
라 목적비행장의 <u>항행안전시</u>	----- <u>항행안전시</u>
<u>설</u> 까지 비행한 후 제공할 것	<u>설이나 위치통지점(FIX)--</u>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5. -----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	-----
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	-----
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	-----
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	-----
간)에 목적비행장의 <u>항행안전</u>	----- <u>항행안전</u>
<u>시설</u> 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	<u>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u>
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	-----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
것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① (생 략)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u><삭 제></u>
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	-----
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	-----

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 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삭 제>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3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삭 제>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

----- 한국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제3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신 설>

법 제123조제6항-----

----- 한국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① -----
-----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
증 대상으로서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등 교육·훈련 등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등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자 증명 등) ① ~ ④ (생 략)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자 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 정처분기준은 <u>별표 44의2</u> 와 같 다.	⑤ ----- ----- <u>별표 44의3</u>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 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 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의 준수사항) ① ----- ----- ----- ----- ----. ----- ----- -----.
1. ~ 8. (생 략) <u><신 설></u>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1조제3항에 따른 무인자 유기구 운영절차를 위반하여 조종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⑤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 가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 가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으로부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를 받은 자는 <u>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u> 무인자유 기구 운영절차에 따라 무인자유 기구를 비행시켜야 한다.	③ ----- ----- ----- <u>별표 44의2</u> 에 <u>서 정하고 있는</u> ----- ----- -----.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 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 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국토교통 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 비행승인) ① ----- ----- ----- ----- ----- ----- <u>지방항공 청장</u> -----.
1. ~ 9. (생 략) ②·③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운송사업자별 <u>기령(機齡)</u> 20년 초과 항공기(이하 “<u>경년항공기</u>”라 한다)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생략)	2. ----- <u>경년항공기</u>----- ----- ----- ----- ----- ③ (현행과 같음)
---	---